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(배준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73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9. 5.

발 의 자 : 배준영 · 임이자 · 추경호
권영세 · 이종배 · 김 건
최수진 · 조승환 · 이상휘
서명옥 · 최은석 · 우재준
이종욱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안검색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에 대해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러나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하나, “소홀히”라는 표현은 그 범위가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법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음.

이에 “보안점검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”을 “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 행위를 야기한 사람”으로 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함(안 제50조제4항제2호 및 제5항제2호).

또한 현행법의 단순 오기를 바로잡고자 함. 이에 따라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을 직접 하거나 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

의 추천을 받아 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확히 함(안 제15조제3항 및 제8항).

아울러,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에 대한 벌칙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(안 제5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등).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3항 및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“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”을 “보안검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”으로 한다.

1의2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람
제51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승객 등의 검색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 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 을 직접 하거나 「경비업법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비업자 중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 업자의 추천을 받아 <u>제6항</u>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 ④ ~ ⑦ (생 략)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<u>제6항</u> 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 야 한다. 1. ~ 4. (생 략)	제15조(승객 등의 검색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7항</u> ----- ----- -----. ④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----- <u>제7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50조(벌칙) ① ~ ③ (생 략)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	제50조(벌칙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

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제15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
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
히 한 사람

3. (생략)

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
벌금에 처한다.

1. (생략)

2.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
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
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사람

3. (생략)

⑥ ~ ⑨ (생략)

제5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
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1의2.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
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
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
함으로써 불법방해행위를 야
기한 사람

2. ----- 보안검
색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
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
써 불법방해행위를 야기한 사
람

3.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
---- 보안검색을 실시하지
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
지 아니함으로써 불법방해행
위를 야기한 사람

3. (현행과 같음)

⑥ ~ ⑨ (현행과 같음)

제51조(과태료) ① -----

부과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항공운송사업자</u> 4. ~ 11. (생략) ② ~ ④ (생략)	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<삭제></u> 4. ~ 11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